의무기록 사본발급 구비서류 안내

1.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

구 분	구 비 서 류
환자 본인 요청	신분증(원본 또는 사본)
환자의 친족 요청 **※ 직계친족이 모두 없는 경우: 형제·자매**	① 환자 신분증(원본 또는 사본) - 환자가 교도소·구치소 수감 중인 경우 환자의 신분증을 수감확인서로 대체 가능 ② 신청인 신분증(원본 또는 사본) ③ 친족관계 증명서 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④ 동의서(환자의 자필서명) [첨부#1]
지정대리인 요청	① 환자 신분증(원본 또는 사본) ② 신청인 신분증(원본 또는 사본) ③ 친족관계 증명서 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④ 동의서(환자의 자필서명) [첨부#1] ⑤ 위임장(환자의 자필서명) [첨부#2]

2.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(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)

구 분	구 비 서 류
환자가 사망한 경우	① 신청인 신분증(원본 또는 사본) ② 친족관계 증명서 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③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	① 신청인 신분증(원본 또는 사본) ② 친족관계 증명서 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③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	① 신청인 신분증(원본 또는 사본) ② 친족관계 증명서 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③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	① 신청인 신분증(원본 또는 사본) ② 친족관계 증명서 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③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
※ 환자의 사망사실 또는 의식불명 등을 증명하는 서류와 관련하여, 해당 의료기관에서 사망·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경우 등 의료기관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서류 제출 불필요	

3. 환자의 직계친족이 모두 없는 경우

구 분	구 비 서 류
환자의 직계친족이 모두 없는 경우 [형제 · 자매]	① 신청인 신분증(원본 또는 사본) ② 친족관계 증명서 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③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[첨부#3] - 환자의 다른 친족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확인서 제출로 갈음

4. 미성년 환자의 경우

<table>
<tr><th colspan="2">환자 나이 / 요청자</th><th>14세 미만</th><th>14세 이상 ~ 17세 미만</th><th>17세 이상 ~ 19세 미만</th></tr>
<tr><td colspan="2">환자 본인 요청
(법 제21조제1항근거)</td><td colspan="3">(의사능력 및 사무처리능력이 있는 경우) 가능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법정대리인 요청
(법 제21조제1항 근거)</td><td colspan="3">법정대리인(친권자)임을 증명하여 항상 요청 가능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환자의 친족 요청
(법 제21조제3항제1호 근거)</td><td>① 친족의 신분증
② 친족관계 증명서</td><td>① 친족의 신분증
② 친족관계 증명서
③ 동의서 [첨부#1]
-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</td><td>① 친족의 신분증
② 친족관계 증명서
③ 동의서 [첨부#1]
-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
④ 환자의 신분증 사본
- 법정대리인이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 환자 신분증 대신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)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지정대리인* 요청
(법 제21조 제3항제2호 근거)</td><td>환자본인 선임</td><td rowspan="2">불가
(不可)</td><td colspan="2">(본인 의사능력 및 사무처리능력 있는 경우) 가능</td></tr>
<tr><td></td><td>① 대리인 신분증
② 동의서 [첨부#1]
- 환자의 자필서명
③ 위임장 [첨부#2]
- 환자의 자필서명</td><td>① 대리인 신분증
② 동의서 [첨부#1]
- 환자의 자필서명
③ 위임장 [첨부#2]
- 환자의 자필서명
④ 환자의 신분증 사본</td></tr>
<tr><td></td><td>법정 대리인 선임</td><td colspan="3">① 법정대리인 증명
②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
③ 지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
④ 동의서 [첨부#1]
-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
⑤ 위임장 [첨부#2]
-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</td></tr>
<tr><td colspan="5">* 친족이나 지정대리인이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이는 민법상의 임의대리인이며, 「의료법」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정대리인이 아님
- 친족이나 지정대리인이 선임하는 임의대리인의 구비서류는 친족 또는 지정대리인이 갖추어야 할 서류에 추가하여, 친족 또는 지정대리인이 작성·교부하는 위임장, 임의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등</td></tr>
</table>

❑ 신분증 범위

❍ 신분증 요건: 공공기관이 발급, 성명·사진·생년월일 수록

❍ 신분증 예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청소년증, 공무원증, 국가유공자등록증 등

❑ 직계 친족의 범위

❍ 환자 본인의 직계존속: 부모, 조부모, 외조부모

❍ 환자 본인의 직계비속: 자녀, 손자녀, 외손자녀

❍ 배우자의 직계존속: 처부모(장인/장모), 처조부모, 시부모, 시조부모

❍ 배우자

※ 직계친족이 모두 없는 경우: 형제·자매

- 이때 형제자매는 환자의 다른 친족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나, 이와 같은 증명이 어려운 경우 확인서(첨부#3) 제출로 갈음

❑ 동의서 작성 방법

❍ 동의서 작성 주체(동의서에 자필서명하는 자)

-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에 대한 '동의'권한은 환자 본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므로 동의서 작성자(자필서명하는 자)는 환자 본인임이 원칙
- 다만 환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작성(자필서명) 할 수 있으며,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라도 환자가 14세 이상이고 의사능력 및 사무처리 능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본인이 작성 가능

❍ 자필서명 이외의 내용 작성 방법

-「의료법 시행규칙」 제13조의3은 자필서명 이외의 내용 작성에 대하여는 자필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대리인의 대필 또는 전자문서 작성·출력한 후 환자가 자필서명하는 방법으로 작성 가능

❍ '환자 본인이 직접 작성합니다.'의 의미

- 최근 개정('18.9.28시행)된 동의서식은 '발급범위(환자 본인이 직접 작성합니다.)'와 '예시'를 추가하여 환자의 동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도록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급 대상이 되는 기록의 종류를 각각 열거하여 적시하여야 함.
- 발급범위 란에 '별첨으로 제출함'을 표시하고 별첨 서면에 환자에 관한 기록의 종류를 나열하여 체크 방식으로 선택하는 방법도 가능

❑ 환자의 친족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(민법상의 임의 대리인)

❍ 친족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

- 대리인은 친족이 직접 요청할 때 필요한 서류에 추가하여 친족이 대리인에게 작성·교부한 위임장(정해진 서식 없음)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의료기관에 제출
- 다만 '의료법 제21조제3항제1호의 환자의 동의를 받은 친족'이 위임하는 경우에는 '환자의 동의서(의료법 시행규칙 별지제9호의2서식)'에 대리인 위임에 대한 동의가 명시되어 있거나 별도의 동의 또는 위임(정해진 서식 없음)이 있어야 함

❍ 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은 복대리인

- 대리인 요청 시 필요한 서류에 다음 ①~②번 서류를 추가하여 의료기관에 제출

① 대리인이 복대리인에게 작성·교부한 위임장

②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

- 다만 환자가 대리인에게 교부한 동의서 또는 위임장(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 또는 제9호의3 서식)에 복대리에 대한 동의 또는 위임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어야 함

[첨부 #1]

■ 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9호의2서식] <개정 2018. 9. 27.>
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

환자 본인	성 명	연락처
	생년월일	
	주 소	
신청인	성 명	환자와의 관계
	생년월일	연락처
	주 소	
열람 및 사본 발급 범위	**의료기관 명칭**	
	진료기간	
	발급 사유	
	발급 범위 (환자 본인이 직접 작성합니다)	
	예시) 진료기록부 사본, 처방전 사본, 수술기록 사본, 검사내용 및 검사 소견기록의 사본, 방사선 사진(영상물 포함), 간호기록부 사본, 조산기록부 사본, 진단서 사본,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사본 등	

본인(또는 법정대리인)은 위에 적은 신청인( )이 「의료법」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따라 본인의 진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본인(또는 법정대리인) (자필서명)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[첨부 #2]

■ 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9호의3서식] <개정 2017. 6. 21.>
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

수임인	성 명	전 화 번 호
	생년월일(외국인등록번호)	위임인과의 관계
	주 소	

위임인	성 명	전 화 번 호
	생년월일(외국인등록번호)	
	주 소	

위임인은 「의료법」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따라 「진료기록 등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」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일체 권한을 상기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.

년 월 일

위임인 (자필서명)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[첨부 #3]
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

확인자	성 명	생년월일(외국인등록번호)
	환자와의 관계	
환자	성 명	생년월일(외국인등록번호)
확인사항	상기 환자의 직계 존속·비속 및 환자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부존재	

본인(확인자)은「의료법」 제2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의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**상기 환자(　　)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·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확인합니다.**

년　　월　　일

본인(확인자)　　(자필서명)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